



의안번호	제 2018 - 3호
보 고 연 월 일	2018. 3. 26. (제8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15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12명)	1
3. 주요 안건	1
I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
1. 의견일치	1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1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	2
2. 의견불일치	2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4
3. 그 밖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 모두 현행유지(의견일치)	6
[참고] 집행유예 기준	6
III.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8
1. 대유형1[일반공갈]	8
가. 현행 양형기준	8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8
다. 형량 분포	8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11
2.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11
가. 현행 양형기준	11

나. 수정된 양형기준	12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12
(2)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12
(3) 제2유형(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4
(4) 제3유형(누범특수공갈)	15
(5) 단서의 변경	16
3. 공갈범죄 형량범위(안)	19
가. 일반공갈 - 견해 일치	19
나.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견해일치	20
다.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형량범위 단서 변경 - 견해불일치	20
IV.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21
1. 현행 대유형1[일반공갈] 양형인자	21
2. 현행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양형인자	22
3. 양형인자 검토	23
가. 대유형1[일반공갈] → 현행 유지(의견일치)	23
나.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23
V.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중 대유형2(유기·학대)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논의 결과	25
1. 대유형2[유기·학대]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논의결과 : 현행과 같음	25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리	25
가. 일반적 기준	25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6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6
3. 유기·학대범죄 형량범위 수정 여부 - 현행유지(의견일치)	26
가. 일반적 기준	26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8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9

라. 유기·학대범죄 형량범위(안) - 모두 현행 유지(의견일치)	30
4. 양형인자 - 모두 현행 유지(의견일치)	31
가. 일반적 기준	31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3
VI. 향후 일정	33

【별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오섭,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제외) 정리” ■ 송오섭,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집행유예 기준)” ■ 이용, 차호동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 검토” ■ 전후재,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 이용, 차호동,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체포·감금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유기·학대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 이용, 차호동,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 |
|--|



I. 제11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3. 12.(월)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범현, 송오섭, 이용, 이진국, 전휴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권상진(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참관)

3. 주요 안건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I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 의견일치

-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 양형인자 부분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의결(2017. 12. 4.)
-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수정
- 양형인자 부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의 죄질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의 죄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질적 구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해가 대립됨**]

2. 의견불일치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1) 다수의견(7인) ⇨ 현행유지

- 현행 기준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경험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논의는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와 연계됨.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유형과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종전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준에서 이를 달리할 근거가 부족함
-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사용된 경우 법조경합으로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됨(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음).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공무방해의 정

도가 중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한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범행의 경중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2) 소수의견(5인)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

-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결합범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은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와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라고만 규정('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서로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달리 취급될 우려가 있음[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데, 그 과정에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이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2개가 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1개가 되어 같은 동일한 사안에서 어느 양형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됨]
-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이 되는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가벌성의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규정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양형기준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 있음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1) 다수의견(10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현행과 같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

- 양형위원회는 종래 양형기준의 설정, 수정에 있어서 ① 불특정, ② 다수, ③ 상당 기간 반복범행의 의미를 개별 범죄마다 달리 평가하여 왔는바, 이는 '개별적(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를 채택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아야 할뿐, 개별 범죄마다 평가를 달리 한다고 하여 양형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
- 양형기준은 책임과 예방을 구분하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예방적 관점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형량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 기준에 있어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예를 들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또 '상당 기간 반복'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언제나 같은 참작사유로 규정되어야 할 필연적 근거도 없음(예를 들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장물범죄 양형기준)
- 연혁적으로 '불특정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에서 다른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예를 들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단체 다중의 위력) 그 보완적 의미에서 일반 참작사유로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일반 참작사유로 되었음

- ‘상당 기간 반복범행’은 행위자적 요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행위적 요소(결과 불법)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상당 기간 반복범행’을 보다 중하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하는 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양형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경험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는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가 많은데, 우발적인 범행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하고 있는 현 집행유예 기준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함이 타당함
 - 다만 다수의견의 입장을 취하면서 현행 양형기준상 범죄유형별로 ① 불특정 피해자, ② 다수의 피해자, ③ 상당 기간 반복범행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혹시라도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됨
- (2) 소수의견(2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통합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변경
- “① 불특정 또는 ②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③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하나의 포괄적 특별가중

인자로 각 사유를 통합하여 규정할 정도의 불법성의 증가성이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의 규정 취지를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반영함이 양형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더불어 범죄의 행위 내지 행위자 반가치를 가중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당초 일반참작사유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에 그 대부분이 이미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된 2인 이상 공동범행, 상습범, 흉기 등 휴대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님
- 제6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대상 범죄군 중 공갈과 손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체포·감금, 강요는 폭력범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 모두 현행유지(의견 일치)

[참고]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 행하였거나, 흉기 기타을 보이거 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 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 있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p>일반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하지는 의견 있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Ⅲ.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대유형1[일반공갈]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2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 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갈	형법 제350조	~ 10년
공동공갈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 15년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5년 ~ (1호, 50억~) 3년 ~ (2호, 5억~50억)

다. 형량 분포

(1) 전체

단위: 명, %

유형	영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제1유형	감경	수	26	0	93	2	92	3	93	1	304	6
		비율	100.0	0.0	97.9	2.1	96.8	3.2	98.9	1.1	98.1	1.9
	기본	수	31	1	159	4	178	3	163	2	531	10
		비율	96.9	3.1	97.5	2.5	98.3	1.7	98.8	1.2	98.2	1.8
	가중	수	7	0	67	7	104	8	64	8	242	23
		비율	100.0	0.0	90.5	9.5	92.9	7.1	88.9	11.1	91.3	8.7
	소계	수	64	1	319	13	374	14	320	11	1,077	39
		비율	98.5	1.5	96.1	3.9	96.4	3.6	96.7	3.3	96.5	3.5
제2유형	감경	수	15	0	28	0	34	0	22	1	99	1

단위: 명, %

유형	영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기본	비율	100.0	0.0	100.0	0.0	100.0	0.0	95.7	4.3	99.0	1.0
		수	1	0	36	12	34	4	41	2	112	18
	가중	비율	100.0	0.0	75.0	25.0	89.5	10.5	95.3	4.7	86.2	13.8
		수	2	0	16	2	36	14	14	1	68	17
	소계	비율	100.0	0.0	88.9	11.1	72.0	28.0	93.3	6.7	80.0	20.0
		수	18	0	80	14	104	18	77	4	279	36
제3유형	감경	비율	100.0	0.0	85.1	14.9	85.2	14.8	95.1	4.9	88.6	11.4
		수	3	0	7	2	5	0	14	4	29	6
	기본	비율	100.0	0.0	77.8	22.2	100.0	0.0	77.8	22.2	82.9	17.1
		수	-	-	7	4	14	2	17	2	38	8
	가중	비율	-	-	63.6	36.4	87.5	12.5	89.5	10.5	82.6	17.4
		수	2	0	7	1	8	4	7	2	24	7
소계	비율	100.0	0.0	87.5	12.5	66.7	33.3	77.8	22.2	77.4	22.6	
	수	5	0	21	7	27	6	38	8	91	21	
제4유형	감경	비율	100.0	0.0	75.0	25.0	81.8	18.2	82.6	17.4	81.3	18.8
		수	1	0	5	0	4	0	10	2	20	2
	기본	비율	100.0	0.0	100.0	0.0	100.0	0.0	83.3	16.7	90.9	9.1
		수	-	-	5	0	1	3	-	-	6	3
	가중	비율	-	-	100.0	0.0	25.0	75.0	-	-	66.7	33.3
		수	-	-	1	0	4	0	-	-	5	0
소계	비율	-	-	100.0	0.0	100.0	0.0	-	-	100.0	0.0	
	수	1	0	11	0	9	3	10	2	31	5	
제5유형	감경	비율	100.0	0.0	100.0	0.0	75.0	25.0	83.3	16.7	86.1	13.9
		수	-	-	1	0	-	-	3	0	4	0
	소계	비율	-	-	100.0	0.0	-	-	100.0	0.0	100.0	0.0
		수	-	-	1	0	-	-	3	0	4	0
전체	비율	-	-	100.0	0.0	-	-	100.0	0.0	100.0	0.0	
	수	88	1	432	34	514	41	448	25	1,482	101	
전체	비율	98.9	1.1	92.7	7.3	92.6	7.4	94.7	5.3	93.6	6.4	

(2)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단위: 명, %

유형	영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단위: 명, %

유형	영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제1유형	감경	수	16	0	65	2	55	3	52	1	188	6
		비율	100.0	0.0	97.0	3.0	94.8	5.2	98.1	1.9	96.9	3.1
	기본	수	18	0	84	3	81	2	79	1	262	6
		비율	100.0	0.0	96.6	3.4	97.6	2.4	98.8	1.3	97.8	2.2
	가중	수	1	0	42	6	40	4	24	4	107	14
		비율	100.0	0.0	87.5	12.5	90.9	9.1	85.7	14.3	88.4	11.6
	소계	수	35	0	191	11	176	9	155	6	557	26
		비율	100.0	0.0	94.6	5.4	95.1	4.9	96.3	3.7	95.5	4.5
제2유형	감경	수	10	0	20	0	19	0	16	0	65	0
		비율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기본	수	-	-	27	12	14	4	19	1	60	17
		비율	-	-	69.2	30.8	77.8	22.2	95.0	5.0	77.9	22.1
	가중	수	1	0	6	2	8	2	5	1	20	5
		비율	100.0	0.0	75.0	25.0	80.0	20.0	83.3	16.7	80.0	20.0
	소계	수	11	0	53	14	41	6	40	2	145	22
		비율	100.0	0.0	79.1	20.9	87.2	12.8	95.2	4.8	86.8	13.2
제3유형	감경	수	1	0	3	1	4	0	5	4	13	5
		비율	100.0	0.0	75.0	25.0	100.0	0.0	55.6	44.4	72.2	27.8
	기본	수	-	-	2	3	5	2	6	2	13	7
		비율	-	-	40.0	60.0	71.4	28.6	75.0	25.0	65.0	35.0
	가중	수	-	-	1	1	4	1	7	2	12	4
		비율	-	-	50.0	50.0	80.0	20.0	77.8	22.2	75.0	25.0
	소계	수	1	0	6	5	13	3	18	8	38	16
		비율	100.0	0.0	54.5	45.5	81.3	18.8	69.2	30.8	70.4	29.6
제4유형	감경	수	-	-	3	0	3	0	1	0	7	0
		비율	-	-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기본	수	-	-	4	0	1	2	-	-	5	2
		비율	-	-	100.0	0.0	33.3	66.7	-	-	71.4	28.6
	가중	수	-	-	1	0	-	-	-	-	1	0
		비율	-	-	100.0	0.0	-	-	-	-	100.0	0.0
	소계	수	-	-	8	0	4	2	1	0	13	2
		비율	-	-	100.0	0.0	66.7	33.3	100.0	0.0	86.7	13.3
제5유형	감경	수	-	-	-	-	-	-	3	0	3	0
		비율	-	-	-	-	-	-	100.0	0.0	100.0	0.0
	소계	수	-	-	-	-	-	-	3	0	3	0

단위: 명, %

유형	영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비율	-	-	-	-	-	-	100.0	0.0	100.0	0.0
전체		수	47	0	258	30	234	20	217	16	756	66
		비율	100.0	0.0	89.6	10.4	92.1	7.9	93.1	6.9	92.0	8.0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 대유형 1(일반공갈)에 속하는 일반공갈, 공동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상 공갈은 법 개정애 따른 법정형의 변동이 없음
-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애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특수공갈 및 상습특수공갈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공갈과 상습특수공갈 모두 대유형1의 기존 권고형량범위에 의하였음
- 현행 권고 형량범위의 준수율이 이득액 범위에 따른 중유형 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92-93%에 달함
- 현 단계에서 대유형1(일반공갈)의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2.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 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법 개정 전 법정형은 상습·특수·누범공갈 각 징역 3년 이상,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각 징역 5년 이상이었음

나. 수정된 양형기준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15년 ↓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1년~15년
제2유형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누범공갈	폭처법 제2조 제3항 제3호	2년~20년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1년 6월~22년 6월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3호	3년~25년

(2)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가) 형량 분포(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6. 1. 6. ~ 2018. 1. 5.)

❖ 상습공갈

이득액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6	
3,000만 원 미만	수			1		1			3			2		7
	비율			14		14			42			28		100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2			1	1	4
	비율								50			25	25	1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수												1	1
	비율												100	100
전체	수			1		1			5			3	2	12
	비율			8		8			41			25	16	100

❖ 특수공갈

이득액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6	
3,000만 원 미만	수		8		3	7	2	1	2					23
	비율		34.79		13.05	30.44	8.69	4.34	8.69					100

이득액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6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1								1
	비율					100								1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수											1		1
	비율											100		100
전체	수		8		3	8	2	1	2				1	25
	비율		32		12	32	8	4	8				4	100

(나) 권고 형량범위(안) :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 · 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다) 검토

- 법정형이 종전에 비하여 상·하한 모두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함
- 상습·특수공갈은 일반 공갈죄에 비해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되, 결과반가치가 큰 대 유형1의 중유형3 이상 구간(이득액 1억 원 이상) 보다는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낮게 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사건 수가 많지는 않으나, 법 개정 이후 2년간 기존 선고형량 분포는 권고 형량범위 내에 거의 포섭되는 결과
- 감경영역 하한을 특수공갈죄 법정형(1년) 하한의 1/2인 6월로 정함으로써 특수공갈죄에 대한 6월의 선고형이 감경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
- 특수공갈로 6월이 선고된 8건 중 7건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사유존재

(3) 제2유형(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가) 형량 분포(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6. 1. 6. ~ 2018. 1. 5.)

- 누범공갈은 다음 3건의 선고 사건 있음

법원	사건번호	범죄사실 요지	형량	비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7고단39	담배 등 물품 갈취	2년	특수협박, 재물손괴 경합
서울 동부지법	2016고단4097	총 13회, 2,665,908원 갈취	2년	상해 경합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단1268	총 6회, 843,000원 갈취	2년	절도, 폭행 경합

- 상습특수공갈은 선고된 사건 없음

(나) 권고 형량범위(안) :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 6월	1년 4월 - 4년	3년 - 6년

(다) 검토

- 법정형이 종전에 비하여 상·하한 모두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함
- 누범·상습특수공갈은 일반 공갈죄에 비해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되, 결과반가치가 큰 대유형1의 중유형3 이상 구간(이득액 1억 원 이상) 보다는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낮게 됨
- 상습·특수공갈보다 법정형이 중하므로 중유형1의 권고 형량 범위보다 무겁게 설정함

- 누범공갈 단일범 사건은 아니지만, 법 개정 후 누범공갈로 처벌된 사건(3건)은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기본영역에 모두 포섭되는 결과
- 감경영역 하한을 상습특수공갈(징역 1년 6월 이상)의 작량감경에 대비하여 10월로 하고, 기본영역 하한도 상습특수공갈의 법정형 하한을 고려하여 1년 4월로 설정함
- 누범공갈의 법정형 하한(징역 2년)을 고려하면 감경·기본영역의 각 하한이 다소 낮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상습특수공갈과의 법정형 차이가 적어 단일한 중유형으로 분류된 이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은 법정형 하한이 1년 6월인 상습특수공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누범공갈과 상습특수공갈의 법정형 하한 차이가 6월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하더라도 양형실무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임

(4) 제3유형(누범특수공갈)

(가) 형량 분포(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6. 1. 6. ~ 2018. 1. 5.)

- 의정부지법 2016고합58 사건 - 누범특수공갈과 누범특수상해의 결합범으로 징역 3년 선고

(나) 권고 형량범위(안) :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공갈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다) 검토

- 법정형이 종전에 비하여 상·하한 모두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함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누범특수공갈은 선고 사례가

- 없어 법정형에 따라 규범적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음
-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보다 법정형이 중하므로 중유형2의 권고 형량 범위보다 무겁게 설정함
 - 누범특수공갈은 일반공갈에 비해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되, 결과반가치가 큰 대유형1의 중유형4 이상 구간(이득액 5억 원 이상) 보다는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됨

(5) 단서의 변경

(가) 기존 단서의 내용과 취지

- 내용
 - “1유형(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또는 2유형(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1유형 또는 2유형의 해당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 범위에 의한다”
- 취지
 - 공갈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기준 설정 시 일반공갈범죄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상습·누범·특수공갈은 행위나 행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기준 대유형2의 중유형 1, 2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 행위반가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공갈보다 오히려 권고형량범위가 더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술식 단서를 추가

(나) 변경의 필요성

- 위 단서는, 기존 대유형2의 중유형 1, 2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 일반공갈보다 권고형량범위가 낮아

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부가된 것임

- 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유형분류에서는 중유형이 3개로 많아지고, 권고 형량범위도 낮아지므로 역전현상 구간이 증가하게 됨
 - 일반공갈 3유형의 경우(이득액 1억 원~5억 원), 수정된 대유형의 중유형 1, 2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더 높음
- 대유형2의 각 공갈범죄는 일반공갈보다 행위반가치가 중한 경우로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보다 경하게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반공갈 4, 5유형에 국한하였던 종전 단서의 취지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다) 단서 변경안 - 의견불일치

- 논의의 배경
 - 검사가 상습·특수·누범공갈 범죄로 기소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유형2의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 기준으로 일반공갈의 권고 형량범위가 더 중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의 필요성 자체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일치됨
 - 다만 대유형1 범죄(일반공갈)의 경우 대유형2 범죄(상습·특수·누범공갈)과 달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되어 있어 양자의 양형인자가 일치하지 않음
 - 이와 같이 대유형1 범죄와 대유형2 범죄의 양형인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이득액의 대유형1 범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와 비교함에 있어서 양자에 공통된 양형인자만 적용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할 것인지, 대유형1 범죄의 고유한 양형인자(현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동종 누범')가 존재하는 대유형2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형인자도 적용하여 대유형1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나뉨

- **다수의견 (7인)** : 단서 적용 시 일반공갈과 대유형2의 양형인자 중 공통된 양형인자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권고 형량범위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해당 유형에 있는 동일한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여 비교하여야 형량범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일반공갈 유형에만 있는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여 나온 형량범위가 대유형2의 형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형량범위의 역전’으로 볼 수는 없음. 만일 그리한다면, 대유형2의 특별가중인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을 제외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형량범위의 역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유형에서 공통된 양형인자를 반영한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고 비교함이 타당함
- **소수의견 (5인)** : 단서 적용 시 일반공갈의 특유한 양형인자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그 양형인자를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일반공갈 유형에만 있는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동종누범까지 반영하여 제1유형(일반공갈)의 형량범위가 제2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ex, 동종누범인 피고인이 특수공갈로 7,000만원 갈취 : 일반공갈로 기소된 경우 대유형1의 제2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가 1년 6월~3년이 되나, 특수공갈로 기소된 경우 대유형2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가 10월~3년이 됨] 일반공갈

유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성을 더 유효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일반공갈 유형에만 있는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떤 죄로 기소되었느냐에 따라 형량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각 단서 변경안 비교]

	다수의견	소수의견
의의	일반공갈 유형에 특유한 두 가지 특별가중인자는 고려하지 않은 권고 형량범위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반공갈 유형에 특유한 두 가지 특별가중인자도 고려한 권고 형량범위와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
근거	기소된 범죄가 상습·특수·누범공갈인 경우에는 대유형 2에 정한 특별양형인자만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권고 형량범위 비교 시 대유형 2에 없는 일반공갈의 특별가중인자들을 고려하는 것은 대유형 2에서 일반공갈과 달리 두 가지 특별가중인자를 제외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	단서는 상습·특수·누범공갈로 기소한 경우, 같은 이득액의 일반공갈로 기소한 경우보다 경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공갈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와 비교할 때는 같은 사건을 일반공갈로 기소한 경우 일반공갈 유형에 정한 모든 양형인자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단서를 둔 취지에 부합
적용결과	각 대유형의 공통된 특별양형인자만 반영하므로, 대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가 기본영역이면, 대유형 1도 역시 기본영역으로 서로 일치함	각 대유형의 특별양형인자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건의 비교대상이 대유형 2에서는 기본영역, 대유형 1에서는 가중영역으로 달라질 수 있음

3. 공갈범죄 형량범위(안)

가. 일반공갈 - 견해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2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 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나.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견해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 6월	1년 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다.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형량범위 단서 변경 - 견해불일치

<p>[1안] - 다수의견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u>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u>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p>
<p>[2안] - 소수의견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u>그 양형인자를 반영한</u>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p>

IV.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재] 논의 결과

1. 현행 대유형1[일반공갈] 양형인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현행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양형인자 검토

가. 대유형1[일반공갈]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일반공갈 유형에 속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법 개정사항이
나 법정형의 변동이 없음
- 유형분류의 수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도 현
행 유지 의견임
- 현행 양형인자도 이를 특별히 수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나. 대유형2[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의견 불일치)

(가) 다수의견(8인) : 일반가중인자 포함 불요

- 관련범죄군인 상해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일반상해군에서만 일반가중요소이고,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
상해군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번 양형인자 수정에서도 그
대로 유지된 점, 특수공갈은 2인 이상의 공동이 구성요건의
일부로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대유형
2에서는 일반가중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상습, 특수, 누범을 같은 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각 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기본 형량범위가 만
들어진 것이므로, 2인 이상 공동 범행의 불법은 특수뿐만 아
니라 상습과 누범의 불법에도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런 이상 2인 이상 공동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하는 것
은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음
- 공동공갈과 일반공갈에서 형량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단
독으로 상습(또는 누범)공갈을 한 경우와 공동으로 상습(또는

누범)공갈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실
증적 근거 없음

(나) 소수의견(4인)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특
수, 상습특수, 누범특수 유형 공갈의 경우 제외)’로 하여
일반가중인자 포함 필요

- 공갈범죄 형량범위 적용의 특성, 즉 공갈의 금액에 따라 상습
공갈·누범공갈로 의율하는 것보다 금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
형으로 의율하는 것이 더 중한 형량범위가 적용되는 경우(ex,
공동하여 1억 원 상당 누범공갈) 일반공갈에 의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불균형 초래 우려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경우에는 행위 반가치가
크며 폭력범죄 성격의 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인자이므로, 적어
도 같은 형량범위 내에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음
- 공동공갈은 일반공갈과 유형구분을 할 정도의 차이는 없다 하
더라도, 형량 차이가 존재(일반공갈의 형량평균 8.0월, 공동공
갈의 형량평균 8.5월)
- 다만, 특수공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에
공동범행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공갈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경우(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에는 공
동공갈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

(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의 나머지 양형인자 - 현행 유지
(의견 일치)

V.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중 대유형2(유기·학대)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논의 결과

1. 대유형2[유기·학대]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논의결과 : **현행과 같음**

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2	중한유기·학대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리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3년↓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10년↓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2년↓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2년↓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5년↓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7년↓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5년↓ 상습1/2가중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7년 ↓
	노인유기·학대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5년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법 제57조	5년 ↓
	청소년학대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 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7년 ↓
존속유기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유기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3년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유기치사·중유기치사·영아유기치사· 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3년 ↑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5년 ↑

3. 유기·학대범죄 형량범위 수정 여부 - 현행유지(의견일치)

가. 일반적 기준

(1)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8월	2월-1년	6월-1년6월
2	중한유기·학대	2월-1년	6월-1년6월	1년-2년

(2)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가)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위에서 본 바와 같음, 유형 및 법정형 변동 없음

(나)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4	6	8	10	12		
감경	수	0	1	0	0	0	1	6.00
	비율	0.0	100.0	0.0	0.0	0.0	100.0	
기본	수	3	10	3	2	2	20	7.00
	비율	15.0	50.0	15.0	10.0	10.0	100.0	
가중	수	0	0	2	0	1	3	9.33
	비율	0.0	0.0	66.7	0.0	33.3	100.0	
전체	수	3	11	5	2	3	24	7.25
	비율	12.5	45.8	20.8	8.3	12.5	100.0	

(다)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제1유형 준수율 100%
- 감경, 기본, 가중영역 모두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됨
-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정변경이 없음

(3)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가)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위에서 본 바와 같음, 유형 및 법정형 변동 없음

(나)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0			42
감경	수	19	1	30	9	5	5	0	0	0	0	0	0	0	69	6.42
	비율	27.5	1.4	43.5	13.0	7.2	7.2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5	0	42	28	15	18	1	1	1	2	2	0	0	115	8.62
	비율	4.3	0.0	36.5	24.3	13.0	15.7	0.9	0.9	0.9	1.7	1.7	0.0	0.0	100.0	
가중	수	2	0	4	2	0	10	0	0	1	6	1	3	1	30	14.93
	비율	6.7	0.0	13.3	6.7	0.0	33.3	0.0	0.0	3.3	20.0	3.3	10.0	3.3	100.0	
전체	수	26	1	76	39	20	33	1	1	2	8	3	3	1	214	8.79
	비율	12.1	0.5	35.5	18.2	9.3	15.4	0.5	0.5	0.9	3.7	1.4	1.4	0.5	100.0	

(다)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제2유형 준수율 93%
- 감경, 기본, 가중영역 대부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됨
[특별가중까지 고려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한 사건은 전체 182건 중 3건(기본영역 2건과 가중영역 1건에 불과함)]
-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정변경이 없음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1년6월	6월-2년	1년-3년

(2)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위에서 본 바와 같음, 유형 및 법정형 변동 없음

(3)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10	12		
감경	수	1	0	1	10.00
	비율	100.0	0.0	100.0	
가중	수	0	1	1	12.00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1	1	2	11.00
	비율	50.0	50.0	100.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이 2건에 불과하고, 2건 모두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됨

-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정변경이 없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2)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위에서 본 바와 같음, 유형 및 법정형 변동 없음

(3)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영역비율
		18	20	24	36			
감경	수	5	1	3	0	9	20.22	90.0
	비율	55.6	11.1	33.3	0.0	100.0		
기본	수	0	0	0	1	1	36.00	10.0
	비율	0.0	0.0	0.0	100.0	100.0		
전체	수	5	1	3	1	10	21.80	100.0
	비율	50.0	10.0	30.0	10.0	100.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일치)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이 10건에 불과하고, 10건 모두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됨
- 최초 설정 당시 법정형이 동일한 폭행치사와 동일하게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었는데,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
-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정변경이 없음

라. 유기·학대범죄 형량범위(안) - 모두 현행 유지(의견일치)

1.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8월	2월-1년	6월-1년6월
2	중한유기·학대	2월-1년	6월-1년6월	1년-2년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1년6월	6월-2년	1년-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양형인자 - 모두 현행 유지(의견일치)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VI. 향후 일정

-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1, 3유형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1~3유형의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제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일시: 2018. 4. 16. 16:00~